



인도네시아정부는 국가별보고서(CbCR)의 절차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국세청("DGT")은 그동안 기다렸던 국가별보고서("CbCR")의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별보고서의 운영 절차에 대한 국세청 규정 No.29/PJ/2017("PER-29")으로 2017년 초기의 재무부장관("MoF")령 No. 213/PMK. 03/2016("PMK-213", 2017년 1월 이전가격 관련 공지에 참고)의 후속 규정임.

PMK-213 및 PER-2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Action 13과 국가별보고서 시행을 위한 후속 지침의 보고 요건과 지침을 준수한다.

PER-29는 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 (a)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 그룹/ 다국적 사업 그룹;
- (b) 국가별보고서 문서화를 위하여 준비 및 제출하여야 서류; 또한
- (c)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시기

PER-29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본 공지는 PER-29의 요점을 요약하고 인도네시아 납세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가별보고서 요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어떤 사업그룹/ 다국적사업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PMK-213 과 동일하게, 아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현지 납세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 연결기준 총 매출액이 11 조 루피아 이상인 사업 그룹의 모회사¹ (“Primary Filing Mechanism”);
Primary Filing Mechanism 에 따르면, PER-29 는 사업 그룹의 모회사를 대신하여 현지 납세자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모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 하여야 되며 이전의 국가별보고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 회사나 관할권에 있는 다른 단체를 지명 할 수 없다.

또는

- 모회사가 외국관할권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결 실체² :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또는
 -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보교환협정의 자격 권한 기관 협정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QCAA)³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국가별보고서를 득할 수 없는 경우 (“Secondary Filing Mechanism”).

Secondary Filing Mechanism 경우 PER-29 는 모회사 및 연결 실체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현지 납세자에 국한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 요건을 제시한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모회사 기준	연결 실체 기준
연결 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해당 회계기간에 연결 총 매출액이 최소한 아래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1)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7 억 5 천만에 상당하는 금액 (2015 년 1 월 1 일에 모회사의 기능 통화 환율에 근거하여); 또는 2) 국가별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모회사가 위치한 관할 구역에 의해 설정된 연결 총 매출액 기준금액이다.	a) 다국적 사업 그룹의 구성원이며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되거나 사업 규모 또는 중요성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외 된 모든 개별 사업체; 그리고/또는 b) 별도의 재무제표를 갖는 상기의 사업체들.

¹ “모회사”는 (a) 사업 그룹의 일부이나, 사업그룹내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회사이거나 (b) 다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모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모회사를 소유하는 구성원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² “연결 실체”는 모회사 및 국가별보고서에서 다루는 사업 그룹의 구성원이다

³ 당사자 간의 국가별보고서 자동 교환을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할 기관 (CA)과 파트너 국가 / 관할 구역의 CA 간의 계약.

모회사가 대리 모회사⁴를 할당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PER-29는 Secondary Filling Mechanism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해외 모회사와 함께 현지 납세자에게 면제를 제공한다.

- a. 현지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리 모회사에 대한 통지를 제출한다; 그리고
- b. 대리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관할은:
 - 1) 국가별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 2) QCAA 가지며 인도네시아 정보가 국가별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모회사가 영국과 같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있는 자회사를 지명하여 영국에서 다국적 사업 그룹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 납세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가별보고서를 위하여 준비 및 제출하여야 서류 무엇인가?

Per-29는 국가별보고서 통지 양식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⁵.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현지 납세자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아래와 같이 각 사업 그룹 / 다국적 기업 그룹 별로 제출해야하는 문서 유형이 요약되어 있다.

회사 조건	서류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 그룹의 모회사	- 통지 양식 - 국가별보고서; 또한 - 국가별보고서의 작업 문서 (PMK-213 부록 E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의무 사항이 아닌 연결 실체 (해외 관할에 거주하는 모회사 경우)	- 통지 양식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의무 사항이 아닌 연결 실체 (해외 관할에 거주하는 대리 모회사 경우)	- 통지 양식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연결 실체 (해외 관할에 거주하는 모회사 경우)	- 통지 양식 - 국가별보고서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의무 사항이 아닌 인도네시아 납세자	- 통지 양식

이 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 그룹의 모회사만이 국가별보고서의 작업 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 명확 해졌다.

상기 서류는 DJP Online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을 통해 제출하거나 DJP Online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제출해야한다. PER-29는 제출이 일반적인 경우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가

⁴ 외국 조세 대상인 당사자가 외국 법인으로 대체 한 경우

⁵ 통보 양식은 규정에 첨부되어 제공된다.

BEPS Action 13 의 일부로 추천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 확장을 사용하여 세무 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보고하는 다국적 사업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통지 양식 그리고/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면 납세자는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 영수증은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 (CITR)에 첨부해야한다. 국가별보고서 제출물의 영수증은 국가별보고서의 대체물로서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보고서 자체를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시기

국가별보고서는 회계 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2 월이내에 제공 가능해야 한다. 통지 양식과 국가별보고서 (필요한 경우 작업 보고서와 함께)는 다음 기간 내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 2016 회계 연도 경우 회계 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6 개월 이내
- 2017 회계 연도 이후의 경우 회계 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2 개월 이내

PER-29 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2016 년부터 시작되는 모회사의 회계 연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PER-29 는 국가별보고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확보 될 수 없는 경우 현지 납세자는 국세청이 QCAA 를 갖고 있지만 국가별보고서를 얻을 수 없는 국가 / 관할 구역 목록을 국세청이 발표 (웹사이트에) 한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 개월이 경과 한 후 납세자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서신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식 요청서를 발급한다.

기타 중요한 정보

벌칙

PER-29 는 필수 문서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국가별 보고서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세자는 미납 세금의 50% 및 IDR1,000,000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CAA 으로 국가별보고서 교환

지금까지 68 개의 국가가 OECD 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관한 다자간 관할 기관 협정(MCAA)에 서명했다⁶. 인도네시아는 2017 년 12 월 활성화 된 교역 관계 갱신 상황에 따라 46 개 국가와 QCAA 에 서명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은 2017 년 1 월 1 일 이후 (싱가포르, 브라질 등) 또는 2018 년 1 월 1 일(말레이시아, 스위스 등)부터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는 관할권에 거주하는 다국적 사업 그룹의 모회사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세무 국의 관할권에서 자발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Secondary Filling Mechanism 에서 현지 신고를 강요하는 현지 관할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일정을 맞추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PER-29 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지 납세자는 문서제출 상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모회사와 협의하고 논의해야한다.

다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모회사와 현지 납세자 간의 과세 연한과 관련하여 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PER-29 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제출 의무에 대한 지침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과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⁶ OECD 웹사이트에 근거하여 <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

또한, PER-29 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시행 지침에서 OECD 가 권고 한 통지 요건을 제출할 날짜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국가별보고서의 교환

미국은 OECD 의 MCAA 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국가별보고서 교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관할 기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⁷.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모든 미국계 다국적 사업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Secondary Filing Mechanism 에 제출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상기에 참고)는 대리 모회사를 지명해야한다.

결론

PER-29 발표는 BEPS Project 의 action 13 을 통해 OECD 가 제시 한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 오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규정 발표는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 임박한 마감 기한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지침이다.

해외 모회사가 기준치인 €7 억 5 천만을 초과하고 MCAA 의 당사자가 아닌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상황에 인도네시아의 조세 조약 및 세금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교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국적 사업 그룹은 2016 년 회계 연도 경우 16 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다는 면제를 얻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 (인도네시아와 QCAA 가 있음)에 제출할 대리 모회사 지명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OECD 의 BEPS Project 에 전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가별보고서의 구현 측면에 대한 이 새로운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 납세자가 준수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한다. 2016 년 회계 연도와 관련된 국가별보고서의 첫 번째 제출 기한은 2018 년 4 월에 마감될 예정이므로 납세자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지 사전 대책을 세우고 사업 그룹 또는 다국적 사업 그룹은 필요한 정보를 대조하고 준비해야할 것이다.

⁷ 미국 국세청 (IRS) 웹사이트 (2018 년 1 월 12 일 최종 업데이트)에 근거하여 <https://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연락처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당사 세무 담당 Partner 또는 Korean Service Group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Custom & Global Trade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방치영 이사	Korean Service Group	bangchiyoung@deloitte.com
배성은 회계사	Korean Service Group	baesungeun@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2992 31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id/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This communication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 is confidential and should not be used or disclosed in any way without our prior consent.